

무배당 현대 이윤보증형Ⅱ

보험약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무배당 현대 이율보증형Ⅱ 보험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약관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기초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 약관에서 “회사”라 합니다)와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 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부담금”이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4.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급여를 말합니다.
6.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7. “가입자”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약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약관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 약관에서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이 약관에서 “수익자”라 합니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수행업무)

-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조(회사의 수행업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부담금의 수령
2.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 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기간)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8조 (부담금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9조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분<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합니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2조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부담금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 시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은 설정된 날에 회사가 결정한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만기상환합니다. 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단, 기간지정식의 경우 이율보증기간이 1년인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적용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3조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의 적용)

- ①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다.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지방채 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1년초과~1년6개월이하 일단위)

• 지표금리(%) = $0.7 \times A1 + 0.3 \times A2$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2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1년6개월초과~2년미만, 2년초과~2년6개월이하 일단위)

• 지표금리(%) = $0.7 \times A1 + 0.3 \times A2$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3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2년6개월초과~3년미만 일단위)

• 지표금리(%) = $0.7 \times A1 + 0.3 \times A2$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 5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6 \times A1 + 0.4 \times A2$

A1: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지방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제14조 (이율보증형 II 상품의 해약환급금)

- ① 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 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아래의 표를 따릅니다.

(단위 : 연%)

경과기간	중도해지이율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이율보증기간의 1/2미만	적용이율×50%×경과월수/보증기간 (단, 최저금리 1.0)
이율보증기간의 1/2이후	적용이율×경과월수/보증기간 (단, 최저금리 1.0)

주) 1. 경과월수 : 해지시점의 경과기간으로 월미만 절하

2. 중도해지이율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X.XX%)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중도해지부과액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잔여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잔여 적립금이 중도해지부과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및 분할,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7. 가입자가 법상 중도인출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 하는 경우

제15조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6조 (해지시 구비서류)

계약의 해지시에는 “해지 청구서(회사양식)”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수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8조 (특별계정의 운용)

-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② 특별계정의 자산의 종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3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4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부칙**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설정된 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의 경우에는 단위보험별 이율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약관의 해지환급금 산출기준(시장가격조정률 등)을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